

의안번호	제 65 호
의결 연월일	1996. 3.

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. 2. 22. 예산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6. 2. 22.

다. 상정일자 : 1996. 3. 8.

제46회 (임시회) 제3차 총무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 (재무과장 : 임원순)

가. 개정이유

-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국가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과 중복되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고,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3조).

-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
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임치빈)

가. 개정배경

- 본 조례는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 (대통령령 제14,857호, '95. 12. 29)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(회계 12500 ~ 2260호, '95. 12. 26)에 의거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
- 지방공무원의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
-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고
- 숙박비의 경우 현행 13,500원부터 20,700원을 14,500원부터 37,500원으로 하고, 식비의 경우 현행 10,000원부터 11,000원을 15,000원부터 25,000원으로 평균 53%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장경비의 실질적인 보전으로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